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3
----------	-------

제출년월일 : 2017.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조제1항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

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신설·강화 되는 규제사항 없음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7. 10. 19. ~ 11. 8. (제출의견 없음)

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원안 동의

- 다.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원안 동의
-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7. 11. 16.)
-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바. 신구조문대비표 1부.
- 사.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을 “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이라 함은 의회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을 “이란 의회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그의”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년도”를 각각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을 “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좌”를 “계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을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과 위원 4인”을 “1명과 위원 4명”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을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회의원 중 1명

제9조제2항제3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 1인”을 “사람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제1호

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3조제3항 본문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소속직원중”을 “소속 직원 중”으로 한다.

제15조 중 “소속직원”을 “소속 직원”으로,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 -----.</p>
<p>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p>	<p>1. ----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 ----- 따른 -----.</p>
<p>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p>	<p>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p>
<p>3. “유족”이라 함은 의회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p>	<p>3. ----이란 의회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그의 ----- ----- -----.</p>
<p>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p>	<p>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p>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3. (생략)
-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

② --- 각 호-----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
-----.

- 1. -----

----- 해당 연도 -----

- 2. -----
----- 해당 연도 -----

- 3. 그 밖에 -----

-----.

② --- 각 호-----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
-----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
급” -----

경우에 한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

-- 한정한다.

② -----란 -----

-----.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
-----.

1. (현행과 같음)
2. ----- 그 밖의 -----
--- 해당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
----- 따라 -----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

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 (생략)

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중 1인
2. (생략)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계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

② ----- 1명과 위원 4명-----

-----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

1. 의회의원 중 1명
2. (현행과 같음)
3. ----- 1명
4. -----
-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

-----.

제10조(심의회 기능) -----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생략)

제13조(심의회 회의)①·② (생략)

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심의회 위원중 의회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생략)

②간사는 구 소속직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

-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심의회 회의)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따라 -----
----- . -----
----- .

④ --- 위원 중 -----

----- .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현행과 같음)

② ----- 소속 직원 중 -----
----- .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
----- 소속 직원 ----- 대
해서는 예산의 범위 -----
--- 그 밖에 -----
--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자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어 윤 남
연 락 처	02-3153-8525